



: 2019-04-17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74 살인
2018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류수현(기소), 류남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변호사 C(국선)

판 결 선 고 2019.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차량 기사로 근무하



는 사람이고, 피해자 F(44세)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 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8:20경 E 기사대기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G, H, I, J과 속칭 '홀라'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점수 계산 문제로 직장 선배인 I과 시비를 벌이다, 같은 대기실 내에 있던 K로부터 "이 회사는 위아래도 없냐?"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K에게 욕설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집어던진 플라스틱 의자에 피해자가 맞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플라스틱 의자에 맞아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자신보다 체격이 건장한 피해자로부터 주먹 등으로 수차례 가격 당하자 격분하여 주위에 있는 사무용품 등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집어던지게 되었는데, 위 상자에서 가위(총길이 17cm, 날길이 12cm)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흉곽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5경 거제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G, N,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경과기록지, 구급활동일지, 현장 및 검안 사진, 사진,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가위(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가위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기사대 기실에 있던 물건으로, 달리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가위를 들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상해치사죄만이 성립한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범하지 않았고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



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3. 배심원 평결결과

가. 범죄사실에 대한 평결

- 유죄 : 9명(만장일치)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대한 평결

- 기각 : 6명

- 인용 : 3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배심원 양형의견

- 12년 : 5명

- 11년 : 1명

- 10년 : 2명

- 8년 : 1명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잘못된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피고인은 직장동료들과 '홀라' 게임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생을 마감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



: 2019-04-17

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장 판사 이 헌 _____

 판사 안은지 _____

 판사 이병호 _____